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기본이 지켜지는 개인정보보호



안전행정부



CONTENTS

I 추진배경

II 현황과 문제점

III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

IV 향후 계획



- **개인정보보호**는 사생활(Privacy) 비밀 보장 및 행복추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이며, IT기반 경제구조 하에서 **경제질서의 근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3월) 등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번호 중심의 개인식별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큰 상황**



-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공공 및 민간부문 실태점검 및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추진** (1.26, 관계장관회의 총리지시)
 - ◆ 국무조정실장(팀장) 및 18개 기관 차관(급)으로 범정부 TF를 구성(2.7),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추진





II

현황과 문제점



실태점검 결과

공공부문

점검개요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단장:각 부처 차관)」을 구성하여 16개 부처 및 소속 산하기관과 공사·공단을 포함한 총 1,234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2월~6월말)

개인정보 관리·유통, 보안기술, 인프라 등에서 문제점 발견

- ▶ 정보를 관행적으로 과다수집하고, 보존기간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하거나 파기 지연 등 관리감독 미흡
- ▶ 인사이동에 따른 시스템 접근권한 변경 미실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관리체계 미비

민간부문

점검개요

안행부, 방통위 등 소관 부처별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취약업체로 지목된 191개 업체 대상 실태점검 실시(1월~6월말)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관리체계가 취약

- ▶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관리감독 미흡 등



사고사례 분석(1)

④ 주요 사고사례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

- 해킹, 내부유출, 위탁업체 관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
- 유출정보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신용정보 유출도 증가
- 유출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및 피해자 권리구제 등은 피해규모에 비해 미흡

주요 사고 사례 원인 및 피해규모

시기	발생기업	발생원인	피해규모	유출정보	제재조치 등
'10.3	신세계물 등 25개 업체	해킹	2,000만명	주민번호, ID, 비밀번호 등	업체별 유출수준에 따라 과태료부과
'11.8	삼성카드	내부유출	80만명	주민번호 앞자리 2개 등	기관주의 및 유출직원 면직
'12.7	KT	해킹	870만건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요금제 등	과징금, 시정조치 명령
'14.1	카드3사 (KB·롯데·NH카드)	위탁업체 유출	8,700만건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결제계좌 등	3개월 영업정지 및 각 사에 과태료 600만원부과
'14.3	KT	해킹	1,170만건	주민번호, 유심카드번호 등	과징금 7천만, 과태료 1천5백만, 시정명령



사고사례 분석(2)

① 주요 범죄유형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정보수집
·
공급 측면

거래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보관·이용하거나, 제3자 불법제공, 해킹 및 판매 등 발생

정보 활용
·
수요 측면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유통 시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거나, 영업·사기 등에 활용

관리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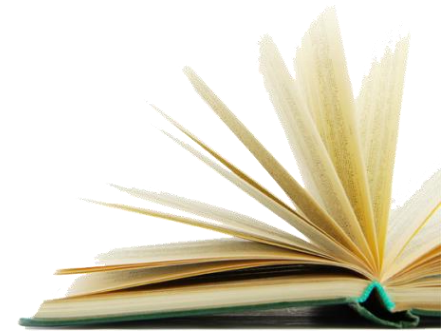
보안프로그램 해지·미설치 등으로 접근권한 제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④ 개인정보보호 핵심 제도 측면

권리구제 및 책임성 확보 관련제도

- 현행법은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소송 절차가 번거로워 배상액도 낮은 실정
➔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낮고 기업이 경각심을 갖기에는 미흡
- 최고경영자 등 임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이 미흡하고, 일부 실무자만 책임을 지는 경향



주민등록번호 관리제도

- 국민적 불안감이 큰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



④ 개인정보 유출 방지 측면

법률 · 조직 · 관리 체계

- 일반법-개별법 체계상 발생 가능한 법률간 정합성 문제 해소 필요
- 현장에서 법 규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력 확보 필요



법률체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분야별로 개별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른 별도의 규제체계 존재

관리체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도 발생

행정시스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요정책을 심의 · 의결하고, 안행부가 정책을 총괄, 소관부처는 금융 · 통신 등 분야별로 감독



III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기본방향

정보관리, 제도, 기술,
권리구제를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

국민이 체감하고
개인 정보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근본대책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책임지는

문화와 시스템 정착

1. 핵심제도 선진화

1. 권리구제 및 책임성 강화

-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2. 주민등록번호 관리제도 개선

- 주민등록번호 보호 강화

2. 유출 예방·방지

1. 현장중심 관리 체계 정비

- 개인정보 관리단계별 강화
- 법률간 정합성 강화 및
행정시스템 개편

2. 유출 예방·방지를 위한 투자 촉진

3. 유출된 개인정보 대응

1.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파기

2. 체계적인 불법정보 단속, 적발

3. 유출정보 활용한 금융사기 방지

핵심제도 선진화 대책(1-1)

권리구제 및 책임성 강화 ①

- 국민들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불편을 최소화**토록 개선
-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는 기관은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제도화**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

-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
- ◆ **법정 손해배상 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구제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 금액(300만원 이내)을 간편하게 보상받는 제도

구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정 손해배상제도
적용요건	기업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입증책임	기업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	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입증책임 면제
구제범위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	사실상 피해액 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
배상규모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이후 유출사고	
적용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핵심제도 선진화 대책(1-2)

권리구제 및 책임성 강화 ②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자에 대해 처벌 강화('14년)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① 범죄로 취득한 수익 몰수·추징	(신설)	사안을 고려하여 형사벌에 병과	개인정보보호법
②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등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징역 10년, 벌금 1억원	개인정보보호법
③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침해행위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④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침입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⑤ 안전성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	(신설)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기준 상향 조정('14년)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안전성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	(신설)	매출액의 3%	신용정보법
	과징금 1억원	매출액의 3%	정보통신망법

◆ 기타 행정처분 결과 공포명령 및 이행결과 보고 등 공표제도 강화('14년) 등

정상화 대책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검토 사항

참고자료

정상화 대책 반영 사항

- ◆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자에 대해 처벌 강화('14년)
 - 고의·중과실로 유출시 피해액 3배 이내 징벌적손해배상, 피해액 입증 곤란한 경우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 법정손해배상
- ◆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부정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한 자는 10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부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형사벌에 병과)
- ◆ 기타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개편(각 개별법 적용대상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제재수준 정비 등)

국회 계류법안 반영사항

- ◆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결과 공표(새누리, 윤재옥 의원안)
- ◆ 개인정보 접속기록 훼손시 벌칙 부과(새누리, 김상민 의원안)
- ◆ 개인정보 처리방침 명확화(새정치, 박남춘 의원안) 등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 ◆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선택정보 수집시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회원 탈퇴를 어렵게 할 경우 과태료 부과
- ◆ 기업의 책임성 강화
 - 수탁자는 수탁업무 수행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의무화, 제3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수집 출처 관리
- ◆ 기타 민간 업종별 자율규제 기구 지정, 운영 및 자율적 보호노력 촉구

핵심제도 선진화 대책(2-1)

주민등록번호 관리 제도 개선 ①

- 과거에 유출된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허용 방안을 마련**
-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 제공이 필요치 않도록**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및 대체수단** 마련을 통해 수요 최소화

주민등록번호 보호 강화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에 변경을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 '14년)

- 한번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가능

기존



- 아래 요건 추가
 - 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되거나 변조되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②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

개선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 문제

-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결론 (안행부)

핵심제도 선진화 대책(2-2)

주민등록번호 관리 제도 개선 ②

수집 최소화 방안

-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 정비 및 적정성 심사체계 구축 (안행부 등)
- ◆ 주민번호 수집·관리에 대한 업종별 매뉴얼 배포 및 캠페인을 통해 관행과 의식 개선('14년~, 안행부)
- ◆ 주민번호 불법 수집 신고창구 운영(8월~, 안행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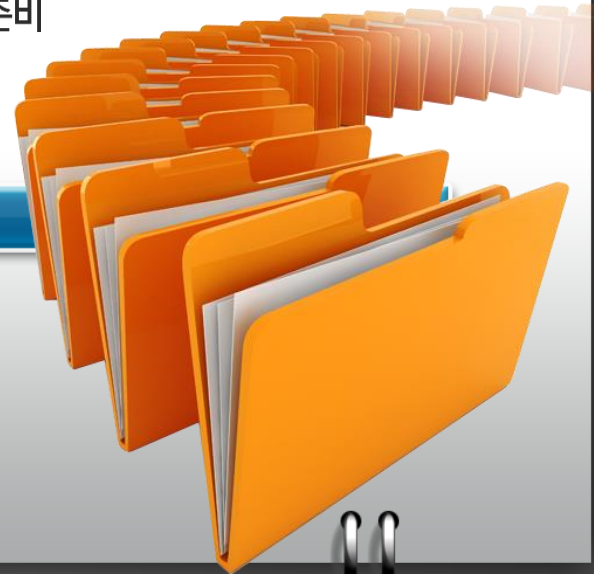
안전조치 강화 방안

- ◆ '16년 1월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의무화에 대비하여 차질없이 시행 준비
 -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시기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추진 ('15년, 안행부)

대체 방안

- ◆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

*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 홈페이지(www.g-pin.go.kr 등)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



유출 예방·방지 대책 (3-1)

현장 중심 관리 체계 정비 ①

- 개인정보유출이 반복되고 있는 취약분야는 **집중관리체계 구축**
-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철저히 보호**토록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관리단계별 강화

▪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점검·개선
(~'15. 3월, 안행부)

▪ 개인정보 출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분야로 지적되어
온 위·수탁관계를 명확히 정립
(‘14년, 안행부)

▪ 법령상 근거에 따라 필요최소한 기간만 보존 후
파기토록 관련 규정 재정비(‘14년, 전부처)

수집단계

관리단계

파기단계



유출 예방·방지 대책 (3-2)

현장 중심 관리 체계 정비 ②

법률간 정합성 강화 및 행정시스템 개편

◆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정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신용정보법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현행	대상	정보통신망을 영리로 사용하는자	신용정보 이용·제공자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개별법 적용대상 제외여부 불명확
	대상수	약 273만개 사업자 + 160만개 스마트폰앱	약 7만개 사업자	약 380만개 사업자
개선	대상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전기통신사업자 (KT 등)와 통신판매사업자(옥션 등)로 한정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개별법 적용사업자는 각 소관부처에 위임·위탁
	대상수	약 37만개 사업자 + 160만개 스마트폰앱	약 3천5백개 사업자	약 340만개 사업자

◆ 개인정보보호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14년, 안행부)

개인정보보호위 권한 추가

- ①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권
- ② 정책·제도 개선권고 및 이행 점검
- ③ 법령간 정합성 유지
- ④ 민간부문 위법사항 조사요구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대상 명확화 개선 사항

참고자료

법률간 적용대상 명확화를 통해 법적용 혼란과 중복규제 우려 해소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업자

(약 380만개* 사업자 ⇒ 약 340만개 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적용 사업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 분야별 소관부처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집행권한 일부를 위임 위탁하여 다수 행정기관에 의한 중복 규제 우려 해소

* '13.9월 통계청 기준 민간사업자 규모는 총 360만개, '11.9월 국세청 기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는 약 20만개

◆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약 273만개* 사업자 ⇒ 약 37만개 사업자**, 스마트폰앱 별도)

- (현행) 온라인상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 모두에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 혼란
- (개선)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와 통신판매업자, 방송사업자 등에 한하여 법 적용

* 전체 개인정보처리자 중 72%가 온오프라인 병행(380만개 × 72% = 약 273만개)

** '13.12월 기준 전국 통신판매사업자 약 34만5천, 신고된 전기통신사업자 약 2만(미신고 사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와 중복)

◆ 신용정보법 적용 사업자

(약 7만개 사업자 ⇒ 약 3천5백개 사업자, 스마트폰앱 별도)

- (현행)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 모두에게 신용정보법이 적용됨에 법 적용 대상 혼란
- (개선) 금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한하여 법 적용

유출 예방·방지 대책 (4-1)

개인정보 유출 예방·방지를 위한 투자촉진

민간투자 확충

민간분야 인센티브 확대방안

- 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 등 직접 투자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14→'17년) 및 확대(7%→10%)
- ②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서비스 컨설팅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25%) 제도 홍보 강화
- ③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신규인력 채용시 인건비 보조(월 최대 90만원/1인)
- ④ '정보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 정부·공공조달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時 가점(0.5~1점) 부여
- ⑤ 기업이 정보보호 관련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5~15%)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업계의 협력 추진
- ⑥ 보안투자 및 법규준수 등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준비·노력(Readiness) 정도를 평가하는 민간자율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도입 추진

기업의 기술적 자율성 제고

- ◆ 정부의 직접규제 대신 인증시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14.12월, 안행부, 미래부, 방통위)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유출 예방·방지 대책 (4-2)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파기

-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 을 설정하여 검색 가능한 **불법 유통정보**를 최대한 삭제
(’14.9월~12월말까지)

체계적인 불법정보 단속·적발

-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단속 전개**
(’14.4월~’15.4월, 정부합동수사단)

집중단속 대상

- ◆ 상거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기업 수집 개인정보의 외부 무단제공, 개인정보 해킹 등
- ◆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관리주체의 책임소재
- ◆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도박사이트 회원유치, 대포폰·대포통장 제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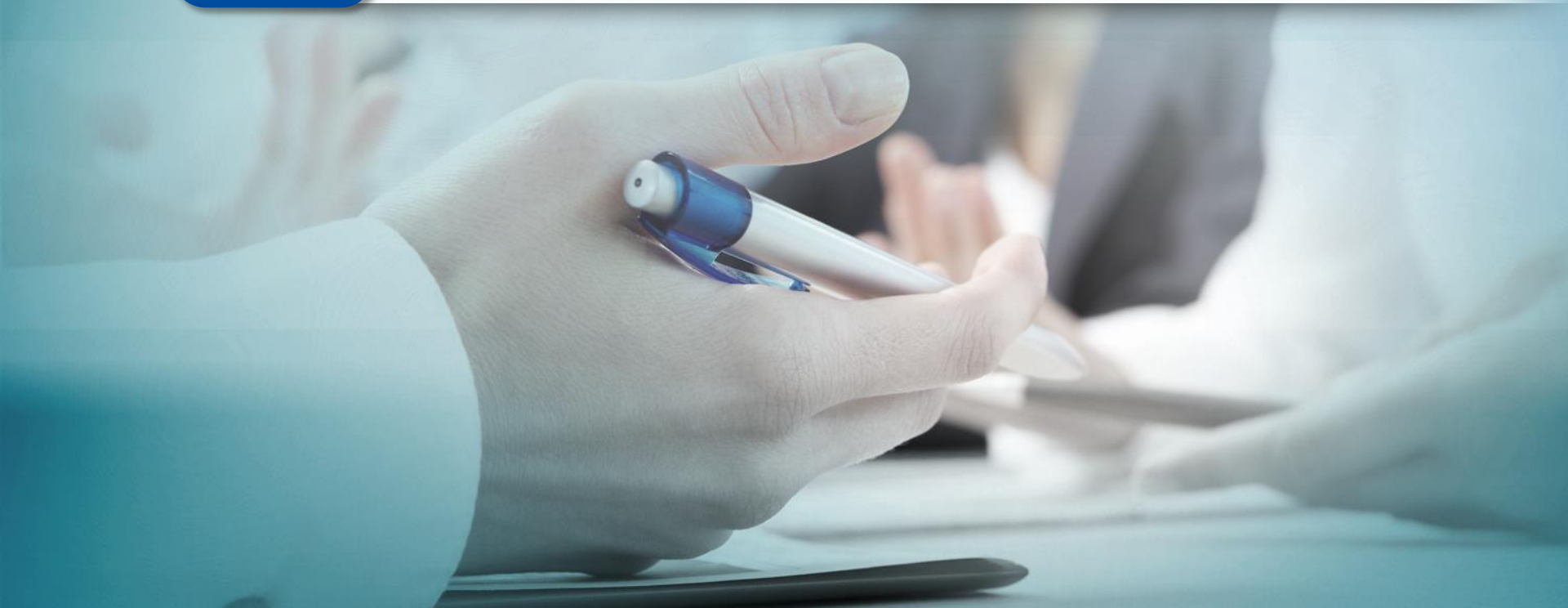
유출정보를 활용한 금융사기 방지

- 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 가능성 최소화

-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매뉴얼」 마련을 의무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정, ’14년, 안행부, 방통·금융위)



IV 향후 계획



조치계획



홍보계획



조치계획

-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및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완료 추진

예산 확보 및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내 마무리

홍보계획



● 핵심 메시지

1

피해구제를 쉽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4

CEO관리책임
강화

5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우려가 큰 경우
주민번호 변경 허용

6

“통신사 대리점 등
개인정보 취약분야
집중관리” 등 구조적
사각지대 개선

7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폐기 위해
총력전 시작 등

●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가이드 대국민 홍보(8월~)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2. '14.8.7일 이후 오프라인 I-PIN 서비스 확대 실시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번호 제공
3. 개인정보 국민신고센터 운영
 - 스미싱 의심문자는 스미싱 확인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선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부